

【저축예금특약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】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조(이자)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(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)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.</p> <p>② <신 설></p> <p>②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 별 이율로 셈한 다음,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빼다. 다만,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금액에 따른 이율로 셈한다.</p>	<p>제1조(이자) ①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더합니다.</p> <p>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(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)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빼다. -----</p> <p>----- 셈합니다. -----</p>	<p>-경어체</p> <p>-결산기준일 선택 다양화 근거 마련</p> <p>-제2항 신설에 따른 항변경</p> <p>-경어체</p> <p>-경어체</p>